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8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서삼석·신영대·문대림

이병진 • 박희승 • 복기왕

소병훈 · 김영진 · 정준호

정을호 · 이개호 · 윤준병

문금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 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 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 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중 "축조"를 "축조 및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u>축조</u> 등) (생 략)		<u>축조 및 안전조치</u> 등)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
		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
		태조사를 매년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u>야 한다.</u>